



MEMORANDUM

날짜	2020년 7월 20일
받는 사람	이미용위원회 면허소유자
보내는 사람	김벌리 키르히마이어 디렉터 소비자 담당 부서
제목	야외 개인 관리 서비스 수행 지침

I. 소개

2020년 3월 4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COVID-19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주 공중보건 담당관은 특정 부문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 전체 공중보건 담당관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주민 간의 COVID-19 확산을 방지합니다.

2020년 7월 13일에 발행된 가장 최근의 주 공중 보건 담당관 명령은 주 모니터링 목록에 있는 카운티의 경우, 이발과 미용이 포함된 추가 부문에 대한 실내 운영 폐쇄를 요구합니다. 명령은 COVID-19 전파 위험이 낮은 야외의 지정된 상황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음의 지침은 실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의 실외 공간을 사용할 때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표준, 실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II.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야외 장소

면허소유 서비스는 주 공중 보건 지침과 일치하는 면허소유 시설과 인접하거나 가까운 면허소유 시설 외부의 야외 지역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면허소유 시설과 인접하거나 가까운 야외 공간에 더하여, 면허소유 서비스는 (1) 면허소유 시설과 근접하고, (2) 면허소유자가 즉시 액세스할 수 있으며, (3) 안전하고 면허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는 야외 공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승인된 야외 공간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면허소유 시설이 포함된 주차장; 및
-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공공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면허소유 시설과 합리적으로 근접한 보도 및 기타 공공 도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모든 야외 공간:

- 도구 및 개인 보호 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가능하게 하려면 면허소유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야외와 같은 환기와 기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 정상적인 공기 흐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둘 이상의 면에 둘러싸이거나 부분적으로 둘러싸일 수 없습니다.

III. 허용되는 야외 서비스

야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 시설은 고객이 업소에 들어가야 하는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타 이미용 서비스는 야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웨이브 파마, 릴렉싱, 탈색, 염색(틴팅, 컬러링, 다이잉) 및 스트레이트 파마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화학적 헤어 서비스;
- 샴푸 및
- 전기분해요법.

이러한 서비스는 야외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배수와 적절한 폐기물 처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 헤어 서비스 및 샴푸를 야외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분해요법은 피부 천공 및 혈액 채취를 수반하는 침습적인 기술이며 통제된 환경에서 실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IV. 야외 공간에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 기준

면허소유자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모든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시설 외부의 야외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지역 토지 사용 요건 및 허가 요건, 주 및 연방 접근성 요건 및 Cal/OSHA의 열병 예방 표준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표준은 시설의 야외 공간을 사용할 때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시설 및 개별 면허소유자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야외 공간 사용에 적용되는 사업 및 전문직법 표준:

- § 7348: 견습직을 제외하고는 시설은 항상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담당해야 합니다.
- § 7349: 제7395.1항 또는 제7395.2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면허를 취득한 시설이 학생 외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실천하는 모든 사람, 회사 또는 기업이 고용 또는 고용을 허용하거나, 사업장에 근무를 허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9부, 야외 공간 사용에 적용되는 표준:

- § 978: 시설은 최소한의 장비와 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 § 979: 사용 전에 모든 비전기식 도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 § 980: 사용 전에 모든 전기식 공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 § 980.3: 모든 발 세면대 또는 욕조는 각 고객이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합니다.
- § 980.4: 라이너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발 세면대와 욕조를 청소해야 합니다.
- § 981(a): 소독할 수 없는 모든 도구는 한 번 사용한 후 버려야 합니다.
- § 984(a): 어떤 시설도 감염 또는 기생충 감염으로 고통받는 면허소유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 984(b): 어떤 시설도 감염 또는 기생충 감염이 있는 고객에 대해 면허소유자가 작업할 수 없습니다.
- § 985: 고객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위생 넥 스트립이나 수건을 사용해서 덮어야 합니다.
- § 986: 사용 전에 모든 목 또는 손톱 브러시를 세척해야 합니다.
- § 987: 모든 침구는 적절히 세탁하고 깨끗하게 덮인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 988(a): 모든 액체, 크림, 왁스, 젤 및 기타 미용제제는 깨끗하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 § 988(b): 모든 병과 용기는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 988(c): 미용제제의 일부만 필요한 경우, 병이나 용기에서 꺼내야 합니다.
- § 989: 어떤 시설도 FDA가 승인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메타크릴산 모노머 및/또는 염화 메틸렌을 구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 § 990: 모든 헤드레스트나 의자는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 시트로 덮어야 합니다. 트리트먼트 테이블은 사용 후 테이블 페이퍼, 깨끗한 수건 또는 깨끗한 시트로 덮어야 합니다.
- § 991: 모든 면허소유자는 침습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 992: 피부 각질 제거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수행해야 합니다. 피부 제거 기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993: 어떤 시설도 칼날이 달린 도구를 사용하여 굳은살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설도 추출에 사용되는 바늘과 같은 도구를 구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